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0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남희 · 김의겸 · 김용민
서영교 · 박지원 · 김한규
김동아 · 이성운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u>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u> 다만, <u>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u>	제6조(검사와의 협력 등) ① ----- ----- ----- ----- ----- ----- ----- ----- ----- ----- <u>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② <u>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u>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② <u>지방공소청장</u> ----- ----- ----- ----- ----- ----- ----- ----- ----- ----- <u>점검하게 --- 점검하는</u> ----- -----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u>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 ③ ----- ----- ----- --- <u>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u>
--	--